

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道 감사위원회 종합감사

□ 감사개요

- 시행기관 :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
- 감사기간 : 2016. 11. 21 ~ 12. 2
(예비감사 : 2016. 11. 16 ~ 11. 18)
- 감사범위 : 2014. 11. 30부터 2016. 9. 30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
- 감사반 : 도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등 12명
- 감사중점 : 공사 경영 전반 및 제규정 준수여부

□ 지적사항

구 분	처분요구 등	조치완료	조치중	비고(금회완료)
계	35건	22	13	
시정(금액)	회수1건/858천원	회수1건/858천원		
시정(기타)	6건	5건	1건	
기관경고	1건	1건		
기관주의	13건	9건	4건	
관련자주의	2명	2명		
훈계/경고	5명	4명 (1명 퇴사)		
개선	1건		1건	
통보	12건	5건	7건	
모범사례	1건/1명	1건/1명		

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道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요구 등 (지적사항)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처분요구 등 내용	조치결과	완결 여부
1	제주크래프트 맥주사업 추진 부적정	기관 경고 / 주의	<p>[기관경고] 주주협약서 작성 및 출자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하여 기관경고 요구</p> <p>[주의]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출자를 할 경우에는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고, 각종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출자 및 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, 사전에 공사 내 담당변호사(2명)와 법률고문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필요 시 법무법인 등의 자문 등을 거쳐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○ 또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찬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, 조치계획 내부결재 등(3월) 	완결
2	판매권역별 물류운영용역 추진 부적정	주의	<p>계약상대자와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서 및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류운영사업 2차년도 계약시 분야별 검사자 지정 완료(2017.01.17.) 	완결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처분요구 등 내용	조치결과	완결 여부
3	“휘오 제주” 공급·구매 약정서 및 판매촉진 물량 사후관리 부적정	주의 / 통보	<p>[주의]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원한 휘오 제주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</p> <p>[통보] 약정에 따라 휘오 제주 공급·구매 물량이 준수되도록 약정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「부속거래약정서」에 신설하거나 판매촉진 물량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판촉지원물량을 연간 지원 물량으로 확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월간 구매 물량의 비율로 정하여 연간 구매물량과 연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조속히 방안 마련 예정 ○ 2016년도 판촉지원물량 활동내역을 공문으로 2017.01.25일 받고 검토 후 2017.01.31 문서 접수 완료 	추진중 / 완결
4	제주삼다수 취수원수 사용관리 및 활용 부적정	통보	<p>관련규정에 따라 양수시험 및 관정CIP 실시를 위한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양수시험 및 관정 CIP 따른 원수절감 방안 또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원수(염소희석수)를 재활용방안을 강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수시험은 관련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양수 시험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원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○ 관정 CIP운영에 대한 자체 매뉴얼로서 「취수정 관리기준서」의 제정 진행 중 ○ 염소 CIP에 따른 원수 사용량 절감을 목적으로 16년 7월에 오존CIP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절감 방안 도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	추진중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처분요구 등 내용	조치결과	완결 여부
5	탄산수사업 추진 검토 소홀	주의	앞으로 신규 투자사업은 「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」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내부투자심의위원회의 내부검증 등을 실시하고 유권해석 또는 관련 법률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「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」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 ○ 관련 조치계획 내부결재 득(3월) 	완결
6	제주삼다수재단 「정관」 불합리 및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미설정	개선 / 통보	<p>[개선] 이사장은 이사중에 호선 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“부결”로 결정하도록 정관 개정하도록 할 것</p> <p>[통보] 삼다수장학재단 자금운영 회계담당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공석인 당연직 이사(공사 사장) 취임 후 재단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개정 예정(5월 중) ○ 공사와 별개의 재단법인으로 공사의 회계규정 준용에 따른 회계직무체계 등 세부조항 검토 중 	추진중 / 추진중
7	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예산운용 부적정	주의 / 통보	<p>[통보] 앞으로 예산편성 이후 여건 변동시 관계 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운용 하고 2017년 예산회계 ERP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</p> <p>[주의] 예산의 목적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업무 연찬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예산이용, 전용, 조정, 이체” 제도의 범위 내에서 운용 중(ERP시스템) ○ 예산의 목적외 집행 예방 교육 실시 (2017.03.15.) 	완결 / 완결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처분요구 등 내용	조치결과	완결 여부
8	2016년 인건비 인상률 적용 부적정	주의	인건비 인상률에 대해서는 당초예산편성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후 연간 인상률로 적용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연도중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 인건비 인상시 처분내용 반영하여 인건비 인상률 적용에 철저를 기하겠음 ○ 관련 조치계획 내부결재 득(3월) 	완결
9	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관리운영 부적정	통보	공동생활 가정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과 입주자 중 저소득층에 대하여 화재보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운영 관리하고자 함(4월) 	추진중
10	일상감사 추진 부적정	주의 / 통보	<p>[주의] 「감사규정」을 위배하여 일상감사가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연찬을 실시하고,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</p> <p>[통보] 일상감사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「감사규정」의 일상감사 처리기간 확보 및 감사일보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상감사 규정 개정을 위한 관련부서 간 워크숍 실시(1월, 2회) ○ 감사규정, 감사규정시행내규 개정 및 일상감사규정 제정 예정(4월 중) 	추진중 / 추진중
11	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부적정	주의	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1월까지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실시 및 감사계획 변경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입CEO 취임(4월), 감사규정 및 일상감사규정 제개정에 따라 연간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보고 예정(4월 중) 	추진중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처분요구 등 내용	조치결과	완결 여부
12	제품별 합리적인 제조원가 배부기준 미비	시정	각 제품별 제조원가는 향후 판매단가 산정 및 사업부문별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조원가 배부기준을 마련할 것	○ 2016년 결산시 직접비 직접 배부후 제조간 접비는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시물레이션 적용결과 조업시간에서 계획정지 시간을 차감한 부하시간(세금과공과 계정제외)으로 배부기준 적용	완결
13	판매처 보증금 확보 관련 규정 미비	시정 / 통보	[시정] 매출채권 미회수에 대비하여 판매처에 대한 판매보증금 수령 또는 담보설정 등 방안을 강구할 것 [통보]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별 분석 및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마련할 것	○ 공사 ERP도입시 채권연령분석 프로그램 도입 완료 ○ 영업관리지침(안) 제정 ○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마련 예정(6월 중)	완결 / 추진중
14	제주용암해수 산업단지 신사업 구상 용역 예산낭비	주의	앞으로 용암해수 자원을 활용한 신사업 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용역과 같이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용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	○ 2016년 우리 공사 중장기 발전전략 (2016~2020) 사업계획에 반영 ○ 향후 용암해수사업 육성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 ○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찬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	완결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처분요구 등 내용	조치결과	완결 여부
15	사원 주택 및 제2취수원 부지 매입절차 등 부적정	주의 / 통보	<p>[통보] 사택운영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비를 현실화 하여 현행운영 체계 및 관련규정 등을 개정 할 것</p> <p>[주의] 앞으로 사택은 임차, 공동주택 매입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투자심사 등 사전 제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택관리비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 ○ 향후 중요재산의 취득 시 사전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겠으며, 재발방지를 위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 숙지 	완결 / 완결
16	재산 및 투자심의 관련 규정의 운영 불합리	통보	<p>- 「재산관리규정」 제37조, 「재산심의회 운영내규」 제2조, 「투자심의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2조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,</p> <p>- 관련 규정 제·개정의 경우 상위법령과 연계성과 운영 목적 및 역할, 기능 등을 감안하고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, 재산심의회를 조속히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산관리규정 및 재산심의회운영내규 개정을 목표로 관련 법률 및 타 기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음 ○ 재산심의회구성은 신임사장 부임 즉시 구성 예정임(4월) 	추진중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처분요구 등 내용	조치결과	완결 여부															
17	제주지역 수자원 보전·관리기 술 기반 구축 연구사업 추진	모범 사례	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기관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하도록	○ 관련부서(직원) 표창 완료(3월)	완결															
18	행사운영비 집행 및 정산 등 부적정	시정	앞으로 예산의 목적외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,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선급금 보증보험료 등 부당 집행액 858천 원을 회수할 것	○ 2017 예산편성 시 광고성경비는 광고선전비 예산으로 편성 ○ 2017. 2. 28. 회수 완료	완결															
19	제주삼다수 도내 공급 부적정	주의	앞으로 특수거래처 공급기준가를 준수하고 위 기준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지면 위 공급가를 개정하는 등 제주삼다수 공급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하도록 할 것	○ 공급기준가를 적용하여 일부 업체 가격 조정 완료 (단위 : 원, 부가세별도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312 1058 1937 1235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조정 전</th> <th>조정 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라마다호텔</td> <td>0.5L 230원/병</td> <td>0.5L 240원/병</td> </tr> <tr> <td>만호</td> <td>0.5L 227원/병</td> <td>0.5L 250원/병</td> </tr> <tr> <td>성판악휴게소</td> <td>0.5L 230원/병</td> <td>0.5L 250원/병</td> </tr> <tr> <td>신동아문구</td> <td>2.0L 482원/병</td> <td>2.0L 500원/병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조정 전	조정 후	라마다호텔	0.5L 230원/병	0.5L 240원/병	만호	0.5L 227원/병	0.5L 250원/병	성판악휴게소	0.5L 230원/병	0.5L 250원/병	신동아문구	2.0L 482원/병	2.0L 500원/병	완결
구분	조정 전	조정 후																		
라마다호텔	0.5L 230원/병	0.5L 240원/병																		
만호	0.5L 227원/병	0.5L 250원/병																		
성판악휴게소	0.5L 230원/병	0.5L 250원/병																		
신동아문구	2.0L 482원/병	2.0L 500원/병																		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처분요구 등 내용	조치결과	완결 여부
20	구내식당 임대사업 추진절차 및 관리운영 부적정	주의 / 통보	<p>[주의]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내식당 관리위탁 계약을 공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상조회에서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</p> <p>[통보] 예산편성 기준이외의 복리후생비 성격 경비가 중복하여 예산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적사항 중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조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와 협의 중 ○ 구내식당 관리주체(공사 또는 상조회)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내식당 운영방안 도출 예정 ○ 구내식당 운영사업자와 식단가(중식/석식) 조정협의 중 ○ 급량비(특근 급식비)는 예산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집행 및 관리 예정 	추진중 / 추진중
21	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 부적정	통보 / 시정	<p>[통보] 일반회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계 관리하고, 예산회계 ERP시스템 도입과 병행하여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현행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</p> <p>[시정] 회계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금 예산회계 ERP시스템 도입 검토 중 ○ 회계재정보증보험 가입 (2017.01.09. 2인) 	추진중 / 완결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처분요구 등 내용	조치결과	완결 여부
22	제주특별자치 도개발공사 물류운영 사업 등 입찰공고 기간 부적정	주의	앞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기준과 다르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	○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입찰공고 기간 준수 (재공고 입찰 긴급공고 2건)	완결
23	제주특별자치 도 탐라영재관 운영 부적정	시정	방재실내에 노후화된 중계기는 교체하도록 하 며, 학생전용식당 홀 및 주방에 자동확산 소화설 비를 설치하고, 학생전용식당운영 계약은 관련 규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할 것	○ 소방수신기 및 중계기 교체 완료(2017.01.18)	완결
24	건축물 안전관리 부적정	통보	건축물 결함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 히 보수·보강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강 구할 것	○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유지보 수 계획을 설비자재팀에 요청 하였으며, 반 영사항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음	완결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처분요구 등 내용	조치결과	완결 여부
25	기록관 기록물 보존·관리 소홀	시정	보존서고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정수점검을 실시하고, 기록관 장비·시설을 기준에 맞게 보유 및 설치하며,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록물 재난대비 비상계획과 기록관 기록물 보안계획을 수립 및 시행 완료(3월) ○ 기록물 정리사업 추진 중 ○ 신사옥 이전에 따른 문서고 이전계획에 따라 기록관 서고시설 확충안을 마련 중 	완결
26	물품관리 부적정	시정	앞으로는 불용물품 결정과 폐기조서 없이 불용물품을 폐기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, 조속한 시일 내에 재물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물품관리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 불용품 처분 시 작성할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서식과 절차에 대해 문서로 전 부서 공유(2016. 12월) ○ 물품내역을 다시 확인하여 자산관리대장에 누락된 물품을 등록 완료 	완결